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건비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44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	2
※ 참고자료	8
1.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경과 및 성과	8
2. 납품대금 연동 절차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

개정안은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 <u>최저임금법</u> 」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u>사항</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납품대금 연동²⁾’이라 정의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³⁾하고 있음.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인 ‘주요 원재료⁴⁾’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하며,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이 포함⁵⁾되나 인건비는 해당되지 않음.

1) 현행법 개정(법률 제19176호, 2023.1.3. 개정, 2023.7.4. 시행)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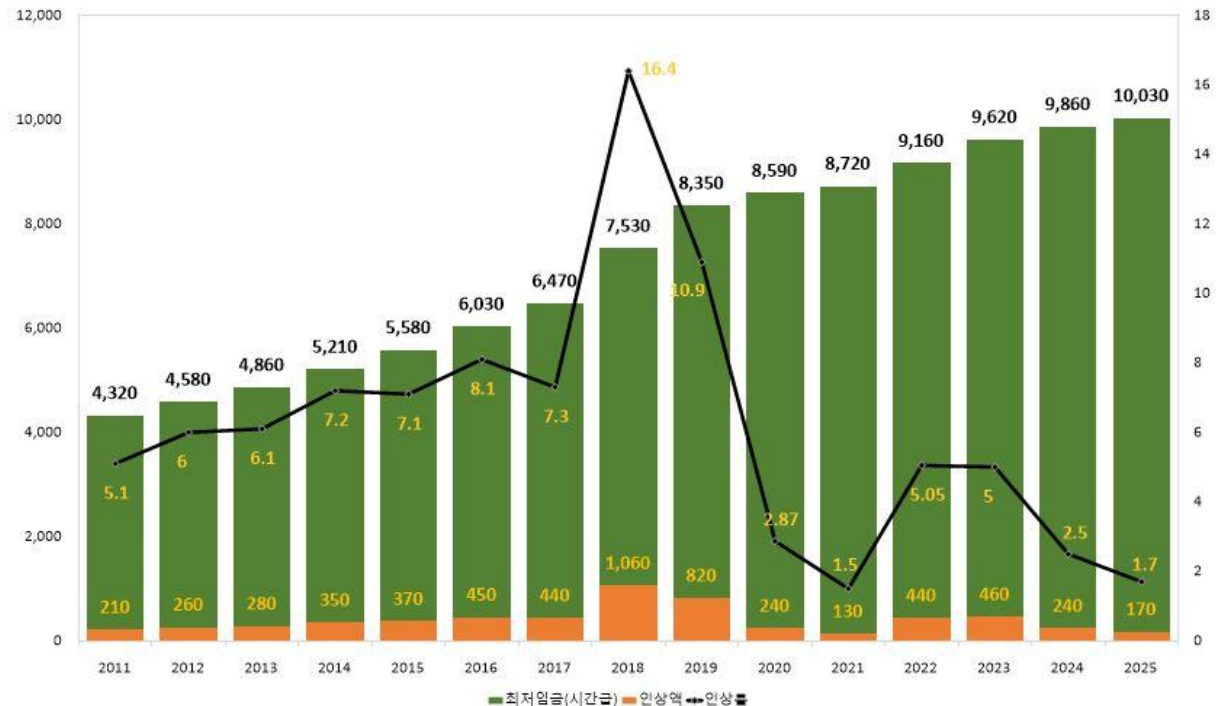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9

한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⁶⁾」에 따라 매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있는데⁷⁾,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인상률은 3.15%임.

[표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원가 중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6)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7)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절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3.31)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6.29까지) → 최저임금안 고시 → 노·사 이의신청(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이의가 인정되는 경우) → 최저임금 고시(8.5.까지) ※ 최저임금 적용: 다음연도 1.1. ~ 12.31.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1.6%가 2025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인상,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 등 늘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당초 납품대금 연동 제도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수직적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임. 노·사 합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인건비는 주요 원재료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탁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물품등의 제조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원가 결정요소에 해당함.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8)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 조사대상: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600개사(최저임금 종사자가 있는 중소기업 대상)

· 조사기간: 2024.5.3 ~ 5.10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일체의 인건비 변동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무비에 미치는 영향과 노무비가 특정 물품의 제조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적용 가능한 납품대금 조정협의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납품대금 연동 적용범위를 에너지요금, 운송요금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법률안」 4건(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915호,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253호,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27호, 이재관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734호)이 계류 중임.

문 의 처
02) 6788-5467

【참고자료】

1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경과 및 성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경과

-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 숙원과제로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고, 현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본격 시행(’24.1.1)

*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23.1.3)·시행(’23.10.4) → 계도기간(’23.10.4~’23.12.31) → 본격 시행(’24.1.1)

□ 실적 및 성과

① 동행기업 모집

- 연동제의 본격 시행 전부터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10,518개사(위탁 443, 수탁 10,075) 모집
- 동행기업의 연동약정 체결 비율은 ’24년 말 기준 38.7%로 ’23년말 18.9% 대비 19.8%p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동행기업의 연동약정 체결 현황 >

(단위 : 개사, %)

구 분		2023년말	2024년말
동행기업	10,518(100.0)	1,983(18.9)	4,068(38.7)
위탁기업	443(4.2)	238(53.7)	296(66.8)
수탁기업	10,075(95.8)	1,745(17.3)	3,772(37.4)

② 로드쇼(현장설명회) 개최

-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23.2)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284회 개최(’24년 말 기준)

③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지정(’23년 1개소 → ’24년 5개소)

- 전국적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을 통해 연동제 홍보·교육 제공 및 현장의 수요 파악(’24.3월~)

* 연동지원본부: 대중소협력재단(총괄),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④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실시

- 약정 체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①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②연동제 적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수탁기업) 원가정보가 위탁기업에게 공유되면 향후 납품대금 감액 요구 등 발생 우려 (위탁기업) 수탁기업의 정보를 신뢰하기 곤란, 불필요한 기술탈취 의혹·분쟁의 우려

⑤ 가이드라인 마련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예규),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 FAQ 등을 마련하여 현장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9)

□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